『續大典』 解題

洪 順 敏[1)]

一. 편찬 경위

『속대전』은 『經國大典』을 계승하는 것을 표방하여 그 체제에 따라 여러 법전들과 受敎들을 모아 편집하여 一七四六년(영조 二二)에 간행된 법전이다. 一七三〇년(영조 六) 一二월 영조는 「근자에 관원들이 태만하게 된 것은 『경국대전』이 오래되어 폐지되거나 이완된 데 연유하는 것이다. 내가 이를 다시 고치고 밝히려고 한 지가 오래 되었다. 이제는 꼭 실행하려고 하니 승정원에서는 먼저 이러한 나의 뜻을 알도록 하라」고 下敎하였다.[2)] 영조는 老論과 少論이 날카롭게 대치하며 換局이 거듭되는 정국에서 즉위하여 초년에는 이를 수습하는 데 진력하였다. 영조 五년에 가서야 이를 어느 정도 수습하여 자신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갖는 조치를 취하였으니 이것이 「己酉大處分」이다. 이러한 기유대처분을 내린 바로 이듬해에 영조는 위와 같이 법전을 修補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영조의 하교는 특정한 법전의 편찬을 지칭했던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전의 修補를 가리켰던 것이다. 이러한 영조의 의지와 당시 분위기에 따라 숙종 연간 법전 편찬의 흐름이 이어져 一七三八년(영조 一四) 무렵에 『新補受敎輯錄』, 一八四〇년대 전반에는 『增補典錄通考』 등이 편찬되었다.

법전 편찬의 움직임은 一七四〇년(영조 一六) 무렵에 가서 좀더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였다. 그 해 四월과 五월에 「修續大典」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3)] 이 「修續大典」이라는 표현은 그러나 구체적인 책명으로서 「續大典을 纂修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大典을 修補하여 續成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 뒤를 이어 구체적인 법전으로서 『속대전』 편찬 작업에 관한 기사는 발견되지 않은채 그로부터 三년 뒤에도 영조가 『受敎輯錄』의 「續成」을 하교하는 기사가 발견되기 때문이다.[4)] 이 무렵까지는 새로운 법전보다는 계속 하달되는 수교를 찬집하여 『수교집록』을 「속성」하는 것이 법전 편찬 논의의 주된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속대전』 편찬 논의는 一七四四년(영조 二〇) 六월에 시작되었다. 이 무렵 형조판서 徐宗玉이 律文이 번다하고 중복되어서 관리들이 이를 집행하는 데 혼돈을 겪고 있으니 한 번 釐正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영조가 이를 받아들여 「增修大典續錄纂輯廳」을 설치하라고 명하였다.[5)] 이로써 『속대전』 편찬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

1) 서울대 강사

2) 『영조실록』 권 二八, 영조 六년 一二월 계축 四二-二四〇-다 敎曰 … 近者 百隷怠慢 率由於大典之歲久廢弛 予欲修明者久矣 今則必欲行之 政院宜先知悉

3) 『영조실록』 권 五一, 영조 一六년 四월 정해 四二-六五九-라 : 五월 계묘 四二-六六一-나

4) 『영조실록』 권 五七, 영조 一九년 三월 기미 四三-八八-라 敎曰受敎輯錄 不可不續成…其令載之受敎 使兩館提學 主管刊印

5) 『영조실록』 권 五九, 영조 二〇년 六월 임신 四三-一四〇-가 先是 刑曹判書徐宗玉 以摠管入直 上夜召見 以欽恤刑獄之意 申申面飭 宗玉曰 律文繁複 官吏眩於奉行 宜一番釐正 上是其言 至是 命設增修大典續錄纂輯廳 刪正刑法 置堂郎 三公句管 取前後續錄 及前後受敎 典律通考 祛其繁複 釐其牴牾 而皆經稟裁

들었다. 그러나 기구의 명칭에서 보듯, 아직은 새 법전의 명칭을 「속대전」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 때까지 쓰였던 「續大典」이라는 표현은 「續典」과 함께 통용되었던 것으로 「大典을 續成한다」는 뜻으로, 「前後의 續錄」과 「전후의 수교」 등을 대상으로 그 번다하고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 서로 어긋나는 것을 바로 잡아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정리함을 가리키는 것이었다.[6]

이 무렵 새 법전 편찬을 발의하고 주도한 사람은 영조였다. 편찬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영조는 승지를 불러서 친히 지은 서문을 내리면서 「題續大典卷首勉飭後昆」이라고 쓰라고 글의 제목까지 지정하기도 하였다.[7] 이로써 범칭으로 쓰이던 「속대전」이 구체적인 책의 명칭으로 확정되었다. 또 찬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당상 具宅奎가 비변사 관원들이 그때그때 건의한 말을 수교에 謄載함으로써 수교가 浩繁해지니 법전을 살피지 않고 임의로 奏達하는 것은 죄를 주어 금지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영조는 이를 받아들여 비변사와 승정원에 명하기를 왕에게 아뢰는 말이 법전을 살피지 않고 가벼이 우선 稟旨한 것은 아닌가 잘 고찰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새로 만드는 법전의 범례에 싣도록 하고,[8] 그 자신은 다시 같은 내용의 「小識」를 지어 서문 다음에 수록하도록 조처하였다.[9] 또 六典의 각 권수에는 「一心乃公 爲官擇人(吏典), 均貢愛民 節用蓄力(戶典), 修擧五禮 无墮舊典(禮典), 愛恤武士 以嚴直衛(兵典), 大公欽哉 勉守法文(刑典), 勤於職任 飭礪百工(工典)」이라는 영조 御製 御筆의 題가 실려 있다. 이는 『속대전』을 편찬하는 데 다른 어느 법전보다도 특별히 국왕 영조가 깊숙히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보자면 『속대전』의 편찬이 영조의 권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기울어져 있음을 드러내주는 예라고 할 수도 있다. 영조는 『속대전』 편찬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는 찬집을 맡고 있는 신료들을 불러서 함께 속대전을 講論하기도 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10]

『속대전』 찬집청에 소속되어 편집에 관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은 영의정 金在魯, 좌의정 宋寅明, 우의정 趙顯命, 형조판서 徐宗玉, 호조판서 金若魯, 예조판서 李宗城, 부사직 李日躋, 부사직 金尙星, 부사직 具宅奎, 부호군 申思觀, 부교리 徐志修, 부교리 魚錫胤, 부사과 金相福, 부사과 金奎采, 부사과 尹光纘, 부사과 南泰耆, 부사과 李坦, 부사과 鄭夏彦등이었다.[11] 그 중에서 세 의정 김재로, 송인명, 조현명은 직책 때문에 의례적으로 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고, 편찬 초기에 찬집청 당상으로서 실제 편찬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것은 서종옥, 김약로, 이종성, 이일제, 김상성, 구택규등이었으며,[12] 실질적인 담당자로서 교정까지 책임을 맡았던 사람은 구택규와 정하언이었다.[13] 이들 편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인물들

6) 『영조실록』 권 五九, 영조 二〇년 七월 계미 四三-一四一-가 上行次對 纂輯廳諸堂 稟定續典律名 『영조실록』 권 六〇, 영조 二〇년 八월 기유 四三-一四四-다 上敎于纂輯廳曰…今此大典續成之際…宜添錄於續大典中也…續典中 依此添錄

7) 『續大典』 「御製續大典卷首勉飭後昆」 『영조실록』 권 六〇, 영조 二〇년 八월 무진 四三-一四六-라 上召承旨 親製續大典序文以下 命以題續大典卷首勉飭後昆書之

8) 『영조실록』 권 六〇, 영조 二〇년 九월 신묘 四三-一五二-가 上行晝講 纂輯堂上具宅奎白上曰 受敎浩繁 有由然矣 廟堂之臣 未嘗深究大典本意 臨時建白 意外濶狹 若或蒙允 輒載受敎 受敎之多 其勢固然 自今以後 不考大典 任意奏達者 宜有罪禁 上是其言 命備局政院 察考其不考本典 徑先稟旨 又命載之凡例

9) 『續大典』 「御製續大典小識復勅群工」 『영조실록』 권 六〇, 영조 二〇년 一二월 무신 四三-一六五-가 親製續大典小識 命繼書于御製序文之下

10) 『영조실록』 권 六〇, 영조 二〇년 一〇월 병인 四三-一五九-가 引見纂輯諸臣 講論續典而罷

11) 『續大典』 「奉敎編次」

12) 『續大典』 「序」 於是焉 命臣宗玉 臣若魯 臣宗城 臣日躋 臣尙星 臣宅奎 俾掌其事

13) 『영조실록』 권 六三, 영조 二二년 四월 병자 四三-二〇九-나 續大典印本成 校正堂上具宅奎加資 郎廳鄭夏彦準職

은 대체로 당시 정국에서 정치색은 약한 반면 법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실무 행정 관료라고 할 수 있다.

찬집청이 설치된 지 五개월 뒤인 一七四四년 一一월에는 『속대전』 편찬 작업이 끝나 예문관 제학 元景夏가 序文을 짓고 영의정 김재로, 좌의정 송인명, 우의정 조현명등이 箋文을 지어 붙였다.[14] 그 때 바로 담당 堂上과 郎廳을 정하여 校正 작업에 들어갔다.[15] 교정 작업은 六개월이 소요되어 그 이듬해인 一七四五년(영조 二一) 五월에 開刊을 하게 되었다.[16] 영조는 이를 교서관에 맡겨 原大典, 곧 『經國大典』과 함께 간행하도록 명하였다.[17]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편찬에서 간행을 명하기까지 상당히 순조롭고 신속한 진행이었다. 그러나 최종 간행은 당시 대사간 南泰溫의 상소에 의하여 뒤로 미루어졌다. 남태온은 소소한 조목에 오류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이를 옛날에 律令을 刪定할 때 兩司에서 署經을 하던 구례를 좇아 교정을 맡은 당상과 낭청이 최종 釐改한 것을 가지고 삼사의 관원들이 함께 朝堂에 모여 일일이 검토하게 하자고 건의하니, 영조도 이를 좋게 받아들여 따랐다.[18] 그리하여 그로부터 一〇개월이 지난 一七四六년(영조 二二) 四월에 가서 『속대전』의 간행이 완료되었다. 간행 완료와 함께 교정을 담당한 구택규와 정하언 등을 시상하였다.[19]

二. 편찬배경

조선왕조의 법은 왕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국왕 자신이나 관료들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 관료들이 논의를 하고 합의, 정리하면 이를 국왕의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하달하게 된다. 이러한 왕명을 「敎」, 「判」, 「制」라고 하였으며,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나 문서를 「王旨」, 「上旨」, 「判旨」, 「敎旨」라 하였다. 이를 공적인 경로를 통해 해당 관원이나 관서에 전달한 것을 「傳旨」, 「傳敎」라 하였고, 각 관아에서 이를 받는 것을 「承傳」이라 하였으며, 승전한 교지를 받들어 행한다는 의미에서 「受敎」라고 하였다. 이렇게 내려진 수교가 제반 법령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수교는 일선 관서에서 시행하면서 좀더 정연한 형태로 정리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더 강하게 갖게 된다. 이것이 「法令」, 「法規」가 되었다. 이러한 법령들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쌓이게 되면 서로 상충하는 것들도 생겨나게 되었고, 따라서 일선 관원들이 실무에 적용하는 데 혼란을 겪는 일이 자주 나타났다. 이에 이러한 여러 법적인 조치들을 종합하여 상충되는 것들을 조정하고 정리하여 하나의 체제를 갖추어 찬집한 것이 法典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왕명에서부터 항구적인 강제성을 갖는 법령에 이르기까지 법의 기초 단위들이 상당한 편차를 띄게 됨에 따라 어느 위상의 것을 어떤 형태로 정리하여 찬집하였는가에 따라 그 결과로 이루어진 법전 역시 다양한 위상을 갖게 된다. 법전의 위상에 따라 그 체제와 내용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각종 법령들을 망라하여 吏, 戶, 禮, 兵, 刑, 工 六典 체제에 따라 종합 정리한 법전을 「大典」類라고 할 수 있다.

14) 『續大典』 「序」, 「箋」
15) 『영조실록』 권 六〇, 영조 二〇년 一一월 신축 四三-一六四-다 上御晝講 領事宋寅明曰 續大典 今旣告成 必一番校正 然後可以入刊 請差校正堂郎 使輪直擧行 允之
16) 『영조실록』 권 六一, 영조 二一년 五월 정유 四三-一八二-나 上引見大臣備堂 … (領議政 金)在魯曰 續大典 今方開刊
17) 『영조실록』 권 六一, 영조 二一년 五월 기해 四三-一八二-라 命芸閣 原大典續大典 一體刊行
18) 『영조실록』 권 六一, 영조 二一년 六월 병오 四三-一八三-나
19) 註 一二 참조

대전류의 법전은 법전 체계에서 최고 위상을 갖는 것으로서 조선왕조의 永世不變의 成憲으로 받아들여졌다. 조선왕조 최초의 것이자 조선왕조 내내 편찬되는 법전의 기본이 되었던 대전이 一四八五년(성종 一六) 최종 반포된 『경국대전』이며, 그 뒤를 잇는 것이 一七八五년(정조 九)에 간행된 『大典通編』과 一八六五년(고종 二)에 간행된 『大典會通』이다.

대전이 반포된 뒤에도 현실적 필요에 따라 수교는 계속 제정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수교들은 기존의 수교와 상충되기도 하는 등 법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조처로서 제정된 법령들은 刪削하고 「永世遵行」할 「良法美意」를 모아 편집한 것이 「續錄」類 법전이다. 속록류는 형식면에서 大典의 육전 체제에 따르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수교를 수집 산삭하고 조문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대전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최고의 권위를 갖는 종합 법전이라기보다는 대전을 보완하는 부차적인 법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一四九二년(성종 二三)에 간행된 『大典續錄』과 一五四三년(중종 三八)에 간행된 『大典後續錄』이 대표적인 속록류 법전이다.

대전류와 속록류가 반포된 이후에도 각종 조처들은 끊임없이 취해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조처들 가운데는 受敎 형태로 반포되는 것이 많았다. 이러한 수교들은 그 수교를 承傳하여 시행한 관서에서 각각 謄錄의 형태로 모아 놓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일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수교들을 해당 관서별로 묶거나 또는 六典 체체로 분류하여 묶은 법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輯錄」類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속록류의 법전이 법령 내용을 정리하여 조문을 가다듬어 대전 체제에 따라 편찬한 것인 데 비하여, 집록류의 법전은 수교를 원문 그대로 싣거나 또는 단순히 축약만 하여, 관서별로 나누거나 육전 체제를 갖추어 모아 놓은 것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속록류에 비하여 집록류는 법전의 정비라는 각도에서 보면 법령의 단순한 모음집으로서 덜 정비된 법전이라 할 수 있다. 집록류의 법전으로는 一五七六년(선조 九)에 편찬된 『各司受敎』와 一六九八년(숙종 二四)년에 간행된 『受敎輯錄』 그리고 수교집록을 수보하여 一七三八년(영조 一四)에 편찬된 『新補受敎輯錄』이 있다.

집록류는 六典 체제로 나누고 그 아래 항목들을 배치하기는 하였지만, 그 직전의 집록류 법전 반포 이후에 하달된 수교들만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 大典이나 續錄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조선후기 숙종 연간에서 영조 연간에는 이러한 집록류의 편찬과 병행하여 「通考」類 법전이 편찬되었다. 통고류는 속록류와 집록류 그리고 개별 수교들을 모아서 일정한 체제에 맞추어 편집하여 종합적인 체제를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법전으로서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면과는 달리 그 내용면의 정비는 충분치 못하여 아직 대전류와 같은 위상은 획득하지 못하였다. 통고류 법전으로는 一七〇六년(숙종 三二)에 간행된 『典錄通考』와 그것을 이어 영조 연간 一七四〇년대에 편찬된 『增補典錄通考』가 있다.

一七八五년(정조 九) 그 때까지 존재하던 대전류와 속록류, 집록류, 통고류 법전들을 모두 아울러 정리하여 『大典通編』이 편찬되었다. 『대전통편』은 명실상부한 대전류 법전이다. 하지만 『대전통편』의 편찬으로 법전 편찬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 사회 변동에 따라 새로운 법령들이 자꾸 하달될 수 밖에 없었고, 실무 현장에서는 현실에 맞는 지침서가 필요하였다. 이에 『대전통편』을 비롯하여 집록류, 통고류, 그리고 새로 하달된 受敎 등 여러 갈래의 법전, 법령들 가운데 실무에 적합한 것을 정리하여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한 법전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便攷」類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편고류에는 「편고」라는 이름이 붙은 것 외에도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각 분야의 일선 관서에서 그 관서의 연혁과 담

당 업무 등을 정리한 官署志와 또 개인적 차원에서 실무지침서로서 작성, 이용하였던 掌攷類 등이 포함된다. 一八세기 말부터는 이러한 편고류가 다수 만들어졌고, 이들을 종합하여 一八六五년(고종 二)에 다시 『大典會通』이라는 대전류 법전이 편찬되었다. 『대전회통』 편찬 이후에도 一九세기 중반까지는 편고류 법전의 편찬은 이어졌다.

『속대전』의 편찬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하여 법전 편찬이 매우 빈번히 이루어지던 조선후기 숙종 연간부터 영조 연간으로 이어지는 법전 편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속대전』이 편찬되기 직전 四○여년 사이에는 『受敎輯錄』과 『新補受敎輯錄』과 같은 집록류 법전 이외에도 『典錄通考』와 『增補典錄通考』와 같은 통고류 법전들도 편찬되어 혹은 刊行, 혹은 筆寫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속대전』을 편찬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을 계승하는 위에 三錄-『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受敎輯錄』을 증보하는 것이 표방되었다. 그것 외에도 『전록통고』와 『증보전록통고』 같은 통고류 법전 역시 수집의 대상이 되었겠지만,[20] 범례에는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다. 이 점은 『전록통고』와 『증보전록통고』가 대체로 三錄을 재정리한 것이어서 그것들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이유보다는 『속대전』의 기본 성격과 연관시켜 보아야 할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하겠다.

『수교집록』은 정국의 주도권이 南人으로부터 西人으로 옮겨진 一六八○년(숙종 六)의 庚申換局 직후인 一六八二년(숙종 八)에 편찬이 시작되어 다시 재차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게 된 一六九四년(숙종 二○) 甲戌換局 四년 뒤인 一六九八년(숙종 二四) 三월에 간행되었다.[21] 『수교집록』은 『각사수교』 이후 一二○여년 동안 하달된 수교들을 모아 행정 일선에서 실무에 적용하기에 편리하게 정리한 집록류의 법전이다. 『수교집록』의 편찬은 곧 서로 충돌을 이루며 누적되어 있던 법제를 정리하고 국가 체제를 추스리는 일차적인 작업이었다. 그것은 활자로 간행되어 널리 배포되고 시행되었다.

하지만 『수교집록』은 집록류 법전으로서 기본적인 성격은 수교를 단순히 모아 놓은 것일 뿐,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대전류나 속록류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대에 효력을 갖는 법령을 찾아 참고하는 데는 편리하였겠지만, 그 이전 대전류나 속록류의 관련 조항과 상충될 때는 대단히 커다란 혼란과 불편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편찬되었던 것이 통고류의 법전이다.

통고류 법전으로 처음 편찬된 것이 『전록통고』였다. 『전록통고』는 一七○一년(숙종 二七) 숙종의 명에 따라 편찬 사업이 시작되어 一七○六(숙종 三二)에 완료,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22] 『전록통고』는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三錄」으로 불리던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그리고 『수교집록』을 비롯한 관련 제서를 「統屬」하여 만든 법전이다. 『전록통고』에는 비단 위의 세 법전 외에도 『경국대전』 편찬에 바탕이 되었던 『經濟六典』과 『朝鮮經國典』, 그리고 禮典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儀章으로 법전 못지 않은 효력을 지니고 있던 『國朝五禮儀』, 형법의 기본 바탕으로 쓰였던 『大明律』과 그 밖의 다른 법률 관계 책들도 참고하여 취합하였다. 『전록통고』의 조항 구성은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을 따르면서, 『경국대전』에는 조항이 없고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에 새로 추가된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조항이 생기면 조항 이름을 새로 추가하

20) 『영조실록』 권 一二七, 영조 五二년 三월 영조 行狀 四四-五五二-가 夏五月 命纂續大典 除全家徙邊律 先是 成宗朝 纂修經國大典 規模甚正 條貫猶未詳 歷代增修 各爲一書 有前續錄 後續錄 典錄通考 受敎輯錄等書 門煩戶衆 不便考据 至是王命設纂輯廳 差九堂上九郎廳 分授六典 刪繁就簡 日引對於前席 親自勘定

21) 具德會, 一九九七 「『各司受敎』·『受敎輯錄』·『新補受敎輯錄』 解題」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참조.

22) 梁晋碩, 一九九七 「『典錄通考』解題」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참조.

였다. 『전록통고』는 이렇게 기존의 제반 법전을 「統屬」하였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법전 편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전록통고』는 수교들을 완전한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하지 못한채 원문 그대로 싣거나 혹은 단순히 축약하여 수록하였다. 그 때문에 그 이후 수교들이 계속 하달될 때 집록류 법전과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수용하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었다. 『수교집록』과 『전록통고』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영조 연간에 들어와서도 『신보수교집록』과 『증보전록통고』가 편찬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증보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내용과 체제면에서 좀더 정비되고 위상면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대전류 법전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 『속대전』이다. 하지만 체제 및 내용면에서 볼 때 『속대전』 역시 이 과제를 충분히 해결하였다고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三. 편집 체제 및 내용

『속대전』의 次序는 『경국대전』을 따라 조항을 설정하고 각 법전의 내용이나 새로 들어간 내용을 이에 맞추어 분류 편집하였다.[23] 『속대전』의 편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御製題續大典卷首勉勅後昆(英祖)
御製續大典小識復勅群工(英祖)
續大典序(元景夏)
續大典凡例
進續大典箋(金在魯等)
目錄
卷之一 吏典 (一九조항)
京官職, 雜職, 外官職, 土官職, 京衙前, 取才, 薦擧, 諸科, 除授, 署經, 褒貶, 考課, 祿牌, 差定, 老人職, 追贈, 給假, 改名, 相避
卷之二 戶典 (二五조항)
經費, 戶籍, 量田, 籍田, 祿科, 諸田, 田宅, 蠶室, 倉庫, 會計, 支供, 解由, 兵船載粮, 魚塩, 外官供給, 收稅, 漕轉, 稅貢, 雜稅, 國幣, 備荒, 買賣限, 徵債, 徭賦, 雜令
卷之三 禮典 (二六조항)
諸科, 儀章, 儀注, 宴享, 朝儀, 待使客, 祭禮, 奉審, 致祭, 奉祀, 給假, 立後, 婚嫁, 喪葬, 取才, 用印, 藏文書, 奬勸, 頒永, 惠恤, 雅俗樂, 選上, 度僧, 京外官相見, 雜令, 用文字式
卷之四 兵典 (四一조항)
京官職, 雜職, 外官職, 土官職, 京衙前, 伴倘, 軍官, 驛馬, 草料, 試取, 番次都目, 軍士給仕, 諸道兵船, 武科, 告身, 褒貶, 入直, 擲奸, 行巡, 啓省記, 門開閉, 侍衛, 符信, 敎閱, 屬衛, 名簿, 番上, 留防, 給保, 成籍, 軍士還屬, 免役, 軍器, 兵船, 烽燧, 廐牧, 驛路, 禁火, 雜類, 用刑, 雜令
卷之五 刑典 (三一조항)

23) 續大典 凡例 一各典序次 一遵大典 而分綱立目 俾有統屬 混入諸典者 隨類移錄 一目錄亦從大典 而其增補者 又用三錄中目錄 各附當典

用律, 決獄日限, 囚禁, 推斷, 禁刑日, 濫刑, 僞造, 恤囚, 逃亡, 捕盜, 贓盜, 元惡鄕吏, 告尊長, 禁制, 訴寃, 賤妻妾子女, 公賤, 私賤, 闕內各差備, 諸司[差備奴 根隨奴], 殺獄, 檢驗, 姦犯, 赦令, 贖良, 補充隊, 聽理, 文記, 雜令, 笞杖徒流贖木, 決訟該用紙
卷之六 工典 (九조항)
橋路, 營繕, 度量衡, 舟車, 栽植, 柴場, 京役吏, 雜令, 工匠

이러한 편차는 기본적으로는 『경국대전』의 六典 체제를 따르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대전류나 통고류의 법전이 그 이전 법전의 모든 내용을 전재하여 정리한 것과는 달리 『속대전』은 『경국대전』의 내용은 다시 수록하지 않고 그 이후의 것만을 수록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24] 官制의 沿革이나 衙門의 신설 사항도 신설된 것은 「增置」라고 밝히고, 그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서 관직이 가감 증치된 것은 관직명만을 쓰고 그 내용은 細註로 처리하였다. 각 조항에는 속록의 예를 따라 「受敎」라는 표기를 하지 않았고 다만 중요한 刑政에 관계되는 특별한 수교에만 그것이 하달된 年月을 표기하였다.[25] 전반적으로 기존의 법전의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만을 수록하는 속록류의 편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속대전』이 대전류 법전으로서 불비하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한계이다.

『경국대전』의 내용을 다시 전재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만을 추려 편집하는 원칙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조항은 수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속대전』에는 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국대전』의 조항 가운데 吏典의 內命婦, 外命婦, 奉朝賀, 內侍府, 限品敍用, 告身, 政案, 解由, 遞兒, 贈謚, 鄕吏 등 一一개 조항, 戶典의 給造家地, 務農, 奬勸, 進獻 등 四개 조항, 禮典의 生徒, 事大, 陳弊, 依牒, 寺社, 參謁, 京外官迎送, 京外官會坐, 請臺 등 九개 조항, 兵典의 外衙前, 疊鼓, 疊鐘, 復戶, 給假, 救恤, 城堡, 積芻, 護船, 迎送, 路引, 改火 등 一二개 조항, 刑典의 才白丁團聚, 銀錢代用, 罪犯准計, 停訟, 賤妾, 賤娶婢産, 根隨, 外奴婢, 奴婢決訟定限 등 九개 조항, 工典의 院宇, 鐵場, 寶物, 京工匠, 外工匠 등 五개 조항, 도합 五〇개 조항이 누락되었다. 이 조항들은 대전류 법전의 조항으로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경국대전』 이후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추가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속대전』에서 누락된 것이다. 대전류로서 완비된 체제를 갖춘 『대전통편』에 가서는 다시 이 조항들이 살아난다.

반면에 이전에 署經, 雜令 등 二개 조항, 병전에 驛路, 雜令 등 二개 조항, 형전에 殺獄, 檢驗, 姦犯, 赦令, 贖良, 補充隊, 聽理, 文記, 雜令, 笞杖徒流贖木, 決訟該用紙 등 一一개 조항, 도합 一五개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는 『경국대전』의 조항으로 편입시키기 어려운 내용의 법령들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형전의 조항들이 많이 신설된 것은 이 시기 신분제의 변동을 비롯한 사회 변화와 민에 대한 형벌을 관대히 하려는 영조의 寬刑主義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속대전』이 대전류 법전으로서 갖는 한계는 卷首의 편차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대전류 법전은 기존의 대전류 법전은 물론, 다른 종류의 법전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권수에도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면서 싣게 되는 글 이외에 기존의 대전류 법전의

24) 續大典 凡例 一今就大典 所不載者 竝皆續輯
25) 續大典 凡例 一 內外官沿革 一從今制 而新設衙門之內則如備邊司 外則如各鎭營之類 竝書增置二字 衙門 雖載大典 凡係官職之加減增置者 只書官名 懸註其下 而橫看直書 竝依大典例 一 各條下 勿書受敎 亦依續錄例 而關係大段 刑政特敎變通者 則列書年月以識

권수에 실려 있는 글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전재하였다. 『대전통편』에는 正祖御製表題, 「大典通編引」, 大典通編箋, 進大典通編箋, 大典通編凡例, 奉敎諸臣銜名, 目錄 등 『대전통편』을 편찬하면서 새로 작성한 글 외에도 『경국대전』의 經國大典序, 進經國大典箋과 『속대전』의 英祖御製御筆各典題辭, 英廟御製題續大典卷首勉勅後昆, 英廟御製續大典小識復勅群工, 續大典序, 進續大典箋 등을 전재하였다. 『대전회통』 역시 『대전통편』의 권수에 있는 글들을 모두 전재한 외에 『대전회통』을 편집하면서 새로 추가되거나 바뀐 大典會通序, 進大典會通箋과 凡例, 奉敎諸臣銜名, 目錄 등을 실었다. 이에 비해 『속대전』의 권수에는 단지 속대전을 편집하면서 새로 작성한 글들만을 싣고 있을 뿐, 속대전 이전의 대전인 『경국대전』의 序文이나 進箋文은 싣지 않았다. 이는 『속대전』이 실질적으로는 『경국대전』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결국 『속대전』은 대전류 법전으로서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四. 영향과 성격

『속대전』은 반포된 이후 영조 후반에는 영조의 깊은 관심 아래 최고의 법전으로서 지위를 유지하였다. 영조와 신료들이 이를 교재로 강론하기도 하였고,[26] 取才에서 試講하는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 등 국정 운영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되었다.[27]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그러한 결과로서 吏典補, 兵典補 등 「續大典補」가 印行되기도 하였다. 「속대전보」는 각 二장의 간략한 것으로, 내용은 王世孫 冊封에 따른 것으로 吏典補는 元子輔養官, 元孫輔養官, 王世孫師傅, 王世孫講書院, 世孫講書院 등의 설치 그리고 世孫嬪의 친족을 제수하고 追贈하는 규정이고, 兵典補는 世孫衛從司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규 一五四七〉〈규 一九二六〉〈규 一一五〇〉〈규 一五四六〉〈규 二三四四〉〈규 一二三八七〉〈규 二六六一〇〉〈고 五一二〇-四〉등 八종의 『속대전』이 소장되어 있는데, 〈규 二六六一〇〉〈규 一二三八七〉은 零本이고 나머지 六종이 완결본이다. 그 가운데 〈규 一五四七〉〈규 一九二六〉〈규 二三四四〉본에만 「속대전보」가 첨부되어 있다. 〈규 二三四四〉본의 경우 吏典補와 兵典補가 본문에 포함되어 각각 吏典과 兵典의 끝부분에 부록되어 있는데 비해, 〈규 一五四七〉본은 吏典補와 兵典補를 본문에 삽입시키지 않고 별책(제五책)으로 만들어 독립시켰다. 〈규 一九二六〉본은 본문의 吏典과 兵典 끝부분에 부록하면서 다시 동일한 내용을 묶어 별책(제五책)으로 만들었다. 이 판본은 제四책까지는 「侍講院」의 藏書印이 찍혀 있으나, 제五책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제五책은 후대에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 본 영인본은 〈규 一九二六〉본을 저본으로 하였는데, 이 책은 전 六권에 보一권 합 五책 분량의 목판본으로 一七四六년(영조 二二) 四월 一二일 侍講院에 下賜된 板本으로서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한편 규장각 소장 판본간에는 이와같은 내용상의 차이 외에도 체제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卷首 가운데 凡例와 進續大典箋 부분의 수록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판본(규 一九二六 등 四종)이 「凡例-進續大典箋」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규 一五四七〉본은 「進續大典箋-凡例」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 〈규 一一五〇〉본의 경우 「進續大典箋-御製續大典小識復勅郡工-凡例」의 순으로 이루어져 다른 판본에서는 앞에 위치한 小識가 進箋과 凡例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은 수록 내용

26) 『영조실록』 권 六〇, 영조 二〇년 一〇월 병인
27) 『영조실록』 권 六四, 영조 二二년 一二월 갑신

과는 무관한 것으로 편집이나 製冊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속대전』은 몇차례에 걸쳐 영인되었는데, 一九三五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內藤吉之助에 의해 校定訓点本이 출판되었다. 一九七二년 일본에서 원래 內藤吉之助 소장본이었던 동경대학 부속도서관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고, 중추원판 활자본에서 「續大典補」 부분을 補寫한 데에 末松保和가 간략한 해설을 붙여 영인한 것이 있으며, 一九八三년 국내 아세아문화사에서 이를 재영인한 것이 있다.

『속대전』은 탕평정치를 추구하였던 영조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여 편집된 법전이다. 이 시기 제반 사회 변동을 수용하는 방향, 특히 일반민에 대한 형벌을 관대히 하려는 방향에서 형전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영조의 뜻에 따라 명칭은 「大典」으로 붙고 차서와 조항의 구성도 『경국대전』을 따랐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경국대전』의 것은 재수록하지 않았고, 또 『전록통고』 등도 포함시키지 않는 등 기본적으로 대전류 법전으로서는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전 법전 이후에 하달된 새로운 수교를 수록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었다는 점에서 결국 대전류의 법전이라기 보다는 내용에 따라서 속록류에 포함시켜야 할 법전이라고 하겠다. 『속대전』의 이러한 지향과 내용의 불일치는 종합 법전, 곧 대전으로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결국 좀더 완비된 「大典」의 편찬을 요청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요청에 따라 편찬된 것이 『大典通編』이다.

[附表] 대전류 법전의 목차 구성

	항목	경국	속	통편	회통
吏 一	內命婦	경	X	통	회
吏 二	外命婦	경	X	통	회
吏 三	京官職	경	속	통	회
吏 四	奉朝賀	경	X	통	회
吏 五	內侍府	경	X	통	회
吏 六	雜職	경	속	통	회
吏 七	外官職	경	속	통	회
吏 八	土官職	경	속	통	회
吏 九	京衙前	경	속	통	회
吏 一O	取才	경	속	통	회
吏 一一	薦擧	경	속	통	회
吏 一二	諸科	경	속	통	회
吏 一三	除授	경	속	통	회
吏 一四	限品敍用	경	X	통	회
吏 一五	告身	경	X	통	회
吏 一六	署經	X	속	통	회
吏 一七	政案	경	X	통	회
吏 一八	解由	경	X	통	회
吏 一九	褒貶	경	속	통	회
吏 二O	考課	경	속	통	회
吏 二一	祿牌	경	속	통	회

吏 二二	差定	경	속	통	회
吏 二三	遞兒	경	X	통	회
吏 二四	老人職	경	속	통	회
吏 二五	追贈	경	속	통	회
吏 二六	贈謚	경	X	통	회
吏 二七	給假	경	속	통	회
吏 二八	改名	경	속	통	회
吏 二九	相避	경	속	통	회
吏 三O	鄕吏	경	X	통	회
吏 三一	雜令	X	속	통	회
戶 一	經費	경	속	통	회
戶 二	戶籍	경	속	통	회
戶 三	量田	경	속	통	회
戶 四	籍田	경	속	통	회
戶 五	祿科	경	속	통	회
戶 六	諸田	경	속	통	회
戶 七	田宅	경	속	통	회
戶 八	給造家地	경	X	통	회
戶 九	務農	경	X	통	회
戶 一O	蠶室	경	속	통	회
戶 一一	倉庫	경	속	통	회
戶 一二	會計	경	속	통	회
戶 一三	支供	경	속	통	회
戶 一四	解由	경	속	통	회
戶 一五	兵船載粮	경	속	통	회
戶 一六	魚塩	경	속	통	회
戶 一七	外官供給	경	속	통	회
戶 一八	收稅	경	속	통	회
戶 一九	漕轉	경	속	통	회
戶 二O	稅貢	경	속	통	회
戶 二一	雜稅	경	속	통	회
戶 二二	國幣	경	속	통	회
戶 二三	奬勸	경	X	통	회
戶 二四	備荒	경	속	통	회
戶 二五	買賣限	경	속	통	회
戶 二六	徵債	경	속	통	회
戶 二七	進獻	경	X	통	회
戶 二八	徭賦	경	속	통	회
戶 二九	雜令	경	속	통	회
禮 一	諸科	경	속	통	회

禮 二	儀章	경	속	통	회
禮 三	生徒	경	X	통	회
禮 四	五服	경	속	통	회
禮 五	儀註	경	속	통	회
禮 六	宴享	경	속	통	회
禮 七	朝儀	경	속	통	회
禮 八	事大	경	X	통	회
禮 九	待使客	경	속	통	회
禮 一O	祭禮	경	속	통	회
禮 一一	奉審	경	속	통	회
禮 一二	致祭	경	속	통	회
禮 一三	陳弊	경	X	통	회
禮 一四	奉祀	경	속	통	회
禮 一五	給假	경	속	통	회
禮 一六	立後	경	속	통	회
禮 一七	婚嫁	경	속	통	회
禮 一八	喪葬	경	속	통	회
禮 一九	取才	경	속	통	회
禮 二O	璽寶	X	X	통	회
禮 二一	用印	경	속	통	회
禮 二二	依牒	경	X	통	회
禮 二三	藏文書	경	속	통	회
禮 二四	奬勸	경	속	통	회
禮 二五	頒氷	경	속	통	회
禮 二六	惠恤	경	속	통	회
禮 二七	雅俗樂	경	속	통	회
禮 二八	選上	경	속	통	회
禮 二九	度僧	경	속	통	회
禮 三O	寺社	경	X	통	회
禮 三一	參謁	경	X	통	회
禮 三二	京外官迎送	경	X	통	회
禮 三三	京外官相見	경	속	통	회
禮 三四	京外官會坐	경	X	통	회
禮 三五	請臺	경	X	통	회
禮 三六	雜令	경	속	통	회
禮 三七	用文字式	경	속	통	회
兵 一	京官職	경	속	통	회
兵 二	雜職	경	속	통	회
兵 三	外官職	경	속	통	회
兵 四	土官職	경	X	통	회

兵 五	京衙前	경	속	통	회
兵 六	伴倘	경	속	통	회
兵 七	外衙前	경	X	통	회
兵 八	軍官	경	속	통	회
兵 九	驛馬	경	속	통	회
兵 一O	草料	경	속	통	회
兵 一一	試取	경	속	통	회
兵 一二	番次都目	경	속	통	회
兵 一三	軍士給仕	경	속	통	회
兵 一四	諸道兵船	경	속	통	회
兵 一五	武科	경	속	통	회
兵 一六	告身	경	속	통	회
兵 一七	褒貶	경	속	통	회
兵 一八	入直	경	속	통	회
兵 一九	擲奸	경	속	통	회
兵 二O	行巡	경	속	통	회
兵 二一	啓省記	경	속	통	회
兵 二二	門開閉	경	속	통	회
兵 二三	侍衛	경	속	통	회
兵 二四	疊鼓	경	X	통	회
兵 二五	疊鐘	경	X	통	회
兵 二六	符信	경	속	통	회
兵 二七	敎閱	경	속	통	회
兵 二八	屬衛	경	속	통	회
兵 二九	名簿	경	속	통	회
兵 三O	番上	경	속	통	회
兵 三一	留防	경	속	통	회
兵 三二	給保	경	속	통	회
兵 三三	成籍	경	속	통	회
兵 三四	軍士還屬	경	속	통	회
兵 三五	復戶	경	X	통	회
兵 三六	免役	경	속	통	회
兵 三七	給假	경	X	통	회
兵 三八	救恤	경	X	통	회
兵 三九	城堡	경	X	통	회
兵 四O	軍器	경	속	통	회
兵 四一	兵船	경	속	통	회
兵 四二	烽燧	경	속	통	회
兵 四三	廐牧	경	속	통	회
兵 四四	積芻	경	X	통	회

兵 四五	護船	경	X	통	회
兵 四六	迎送	경	X	통	회
兵 四七	路引	경	X	통	회
兵 四八	驛路	X	속	통	회
兵 四九	改火	경	X	통	회
兵 五O	禁火	경	속	통	회
兵 五一	雜類	경	속	통	회
兵 五二	用刑	경	속	통	회
兵 五三	雜令	X	속	통	회
刑 一	用律	경	속	통	회
刑 二	決獄日限	경	속	통	회
刑 三	囚禁	경	속	통	회
刑 四	推斷	경	속	통	회
刑 五	禁刑日	경	속	통	회
刑 六	濫刑	경	속	통	회
刑 七	僞造	경	속	통	회
刑 八	恤囚	경	속	통	회
刑 九	逃亡	경	속	통	회
刑 一O	才白丁團聚	경	X	통	회
刑 一一	捕盜	경	속	통	회
刑 一二	贓盜	경	속	통	회
刑 一三	元惡鄕吏	경	속	통	회
刑 一四	銀錢代用	경	X	통	회
刑 一五	罪犯準計	경	X	통	회
刑 一六	告尊長	경	속	통	회
刑 一七	禁制	경	속	통	회
刑 一八	訴寃	경	속	통	회
刑 一九	停訟	경	X	통	회
刑 二O	賤妾	경	X	통	회
刑 二一	賤妻妾子女	경	속	통	회
刑 二二	公賤	경	속	통	회
刑 二三	私賤	경	속	통	회
刑 二四	賤娶婢産	경	X	통	회
刑 二五	闕內名差備	경	속	통	회
刑 二六	跟隨	경	X	통	회
刑 二七	諸司差備奴跟隨奴定額	경	속	통	회
刑 二八	外奴婢	경	X	통	회
刑 二九	殺獄	X	속	통	회

刑 三O	檢驗	X	속	통	회
刑 三一	姦犯	X	속	통	회
刑 三二	赦令	X	속	통	회
刑 三三	贖良	X	속	통	회
刑 三四	補充隊	X	속	통	회
刑 三五	聽理	X	속	통	회
刑 三六	文記	X	속	통	회
刑　三七	雜令	X	속	통	회
刑 三八	笞杖徒流贖木	X	속	통	회
刑 三九	決訟該用紙	X	속	통	회
刑 四O	奴婢決訟定限	경	X	통	X
工 一	橋路	경	속	통	회
工 二	營繕	경	속	통	회
工 三	度量衡	경	속	통	회
工 四	院宇	경	X	통	회
工 五	舟車	경	속	통	회
工 六	栽植	경	속	통	회
工 七	鐵場	경	X	통	회
工 八	柴場	경	속	통	회
工 九	寶物	경	X	통	회
工 一O	京役吏	경	속	통	회
工 一一	雜令	경	속	통	회
工 一二	工匠	경	속	통	회
工 一三	京工匠	경	X	통	회
工 一四	外工匠	경	X	통	회